

수원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65156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65156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3 선고 2018가단5110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총회

피고, 항소인C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 선고 2018. 12. 6.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3. 선고 2018가단5110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의 동의 하에 B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퇴거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최창석

판사염경호

판사김민정